##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97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정청래·이병진·허 영

이건태 · 김영환 · 이언주

박홍배 · 김현정 · 황명선

박균택 • 서영교 • 김준형

김성환 · 김용민 · 진선미

이성유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 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 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및 제31조(모욕)의 죄"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포등을 한 자 또는"을 "반포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으로,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소유·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	제2조(정의) ①
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	3
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	
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	
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	
년자등에 대한 간음), <u>제303</u>	<u>제303</u>
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	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
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
	<u>307조(명예훼손)</u> , 제308조(사
	자의 명예훼손) 및 제311조
	<u>(모욕)의 죄</u>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 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 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 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등) ①
<u> 7년7천만원</u>
②
반포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
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
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
<u>는</u>
<u>7년</u>
<u>7천만원</u>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u>7년</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생 략)

③	-
	-
	-
<u>10년</u>	-

④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소유·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